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

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.
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합니다.

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,

「청년기본법」이 2023.3.21. 개정되어 자치구별 청년 센터에 예산지원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청년센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, 운영비(인건비)를 포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아무쪼록 자치구별로 청년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서울 청년들에게 공감하고 청년의 삶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 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